

오산시 시보 발행 규칙

제정 1993년 9월 28일 규칙 제244호
개정 1998년 11월 25일 규칙 제374호
(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때문에
오산시기획업무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)
전부개정 2019년 6월 12일 규칙 제851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오산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발행) ① 오산시 시보(이하 “시보”라 한다)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, 고시, 공고,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필요시에 발행한다.

②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.

제3조(규격)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.

제4조(편찬 구분과 순위) 시보의 편찬 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례란
2. 규칙란
3. 훈령란
4. 예규란
5. 자치법규 입법예고란
6. 고시란
7. 공고란
8. 그 밖의 사항

제5조(게재의뢰) ①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 담당부서로 시보 발행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② 시보 게재의뢰는 공문으로 하거나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배부기준) ① 전자시보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② 종이시보는 도, 관내 공공기관, 직속기관, 사업소,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

오산시 시보 발행 규칙

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.

제7조(시보의 보급)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.

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(시보의 공문대체)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1. 조례 · 규칙의 공포
2. 훈령 · 예규의 발령

부칙 <2019. 6. 12 규칙 제851호 전부개정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